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01월 15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엠플러스자산운용(주)
(영문명) MPLUS ASSET MANAGEMENT CO.,LTD.
(홈페이지) <http://mplusasset.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2층)
(전 화) 02-6007-4700

대 표 이 사 :

담 당 임 원 : (직 책)본 부 장
(성 명)이 웅 경 (전 화)02-6007-4707

작 성 자 : (직 책)사 원
(성 명)정 소 희 (전 화)02-6007-4731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의한 『법정공시 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11-1호)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6.01.15	오후 3시
2.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도곡동, 군인공제회관 22층) 당사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상근감사 전환(안)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안)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16.1.15	
-사외이사	참석(명)	-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없음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신동수	62.09.25	16.1.17 ~ 18.1.16	신규선임	- (주)하나투어 상무이사 - (주)한국리조트산업개발 대표 - 광희 개발전문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주) 부사장	엠플러스 자산운용(주) 운용본부장	- 부산대 기계공학 (수료) - 연세대 경제학사 - 연세대 경제학 석사	대한 민국

<기재상의 주의>

- 주1) 상법,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한 때 신고한다.
- 주2) “의안 주요내용”은 의안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사업목적 변경, 이사.사외이사의 선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포함)선임, 집중투표제 도입.폐지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
- 주3) 임원선임의 경우 “의안 주요내용”에 “상근이사 ○명, 비상근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위원 ○명, 감사 ○명 선임”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해임의 경우 “의안 주요내용”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주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란에 기재한다.
- 주5) “신규선임여부”는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6)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7) “현직”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상근.비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인 경우에는 그 임

기를 함께 기재하며,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

주8)【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의 “사외이사 여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9)【감사선임 세부내역】의 “상근여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10)【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은 도입하는 경우 “변경 전”에 “배제”, “변경 후”에 “적용”을 기재하고,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

주11)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2)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제11-11-2호)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상근감사 전환(안) (제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안)
2. 주주총회 일자	2016.01.15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없음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 학력	국적
신동수	62.09.25	16.1.17 ~ 18.1.16	신규선임	- (주)하나투어 상무이사 - (주)한국리조트산업개발 대표 - 광희 개발전문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주) 부사장	엠플러스 자산운용(주) 운용본부장	- 부산대 기계공학 (수료) - 연세대 경제학사 - 연세대 경제학 석사	대한 민국

<기재상의 주의>

- 주1) 상법, 정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신고한다.
- 주2) “결의사항”은 의안 안건별로 요약하여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사업목적변경, 이사.사외이사의 선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포함)선임, 집중투표제 도입.폐지 안건은 해당 세부내역서식에 따라 별도로 기재한다.
- 주3) 임원선임의 경우 “결의사항”에 “상근이사 ○명, 비상근이사 ○명, 사외이사 ○명, 감사위원 ○명, 감사 ○명 선임” 등의 방식으로 임원 선임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원해임의 경우 “결의사항”에 해임임원별로 각각 해임사유,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주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은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란에 기재한다.
- 주5) “신규선임여부”는 “신규선임” 또는 “재선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6) “주요경력”은 선임일로부터 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주요경력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7) “현직”은 신고일 현재 당해임원의 소속기관명 및 직책을 기재하되, 다른 상장법인의 임원(상근.비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감사)인 경우에는 그 임기를 함께 기재하며, 임원선임 이후 퇴임여부.시기 등을 함께 기재한다.
- 주8)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의 “사외이사 여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9) 【감사선임 세부내역】의 “상근여부”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주10) 【집중투표제 도입.배제 세부내역】은 도입하는 경우 “변경 전”에 “배제”, “변경 후”에 “적용”을 기재하고, 폐지하는 경우 그 반대로 기재한다.
- 주11) 상기 기재사항 외의 외부감사인 변경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 주12)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 중에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